

# 남서울교회 직분자 선거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과 남서울교회(이하 ‘본 교회’라고 한다) 「공동의회」규칙에 의한 본 교회 선거가 성도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교회 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하 “직분자”라 한다) 후보자 당회 추천 선거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13장 제1조 단서 및 제3장 제3조 제3항 제2호 제2목 단서에 의거 당회가 직분자 후보를 공동의회에 추천하기 전에 제직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하는 직분자 후보에 대한 추천 선거를 말한다.
2. 직분자 선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13장 제1조 및 제3장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당회가 직분자 후보를 공동의회에 추천하여 공동의회에서 행하는 직분자 선출에 대한 선거를 말한다.

제4조(선거권 행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공고 및 SNS 안내)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선거권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직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선거 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권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밀히 할 것인데 교회나 어떤 회에서든지 선거에 대하여 특정 후보자를 추천 또는 권유하거나 문서, SNS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한다.

## 제2장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제6조(선거권자) ① 선거권자는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권자와 직분자 선거권자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

1.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권자는 제1장 제3조 제1호의 선거권을 갖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 당시 직분자(장로, 안수집사, 권사; 협동, 사역, 은퇴 포함), 서리집사, 사역자 및 배우자, 2019년 이전에 임명된 무임 직분자를 말한다. 만 65세 때 서리집사로 시무를 사면한 서리집사는 만 70세가 되는 해까지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권자가 된다.
2. 직분자 선거권자는 제1장 제3조 제2호의 선거권을 갖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선거 당시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 세례교인을 말한다.

제7조(피선거권자) ① 장로 후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 교회 등록 교인으로 주일성수와 헌금 생활을 준수하고 3년 이상 본 교회 안수집사 또는 협동장로로 봉사한 성도 중 연령이 만 5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자 (다만, 휴직 중인 안수집사는 제외)

2. 신앙훈련 필수교육과정(전폭1단계, 피스메이커, 기독교교리, 성경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 2과목 이상 이수하고 목자로 5년 이상 섬긴 자

② 안수집사 후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 교회 등록 남성 교인으로 주일성수와 헌금 생활을 준수하고, 본 교회에서 5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한 성도 중 선거년도에 제직으로 섬기고 있는 자(협동안수집사는 3년 이상이지만, 이명증서를 제출한 협동안수집사는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령이 만 4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자

2. 신앙훈련 필수교육과정(전폭1단계, 피스메이커, 기독교교리, 성경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 2과목 이상 이수하고 목자로 3년 이상 섬겼거나 또는 목장 참여 5년 이상인 자

③ 권사 후보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본 교회 등록 여성 교인으로 주일성수와 헌금 생활을 준수하고, 본 교회에서 10년 이상 서리집사로 봉사한 성도 중 선거년도에 제직으로 섬기고 있는 자(협동권사는 3년 이상이지만, 이명증서를 제출한 협동권사는 2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령이 만 50세 이상부터 65세 이하인 자

2. 신앙훈련 필수교육과정(전폭1단계, 피스메이커, 기독교교리, 성경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중 2과목 이상 이수하고 목자 2년을 포함한 목장 참여 10년 이상인 자

④ 한번 직분자 후보였던 사람은 이후의 선거에서 65세까지 해당 직분자 후보 자격을 유지한다.

⑤ 직분자 후보에서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직분자 후보 명부 확정일까지 자필로 서명한 사퇴서를 담당 교구목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령 산정기준)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직분자 선거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하며, 피선거권자의 봉사 연수, 목자 연수, 교육 이수 여부 등은 후보를 선정하는 때에 이미 완료된 것만 인정한다.

제9조(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심각한 건강 문제, 생업을 위한 장기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선거년도 3월 말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목장 모임 포함)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이 중지된다.

② 선거일 현재, 교회 헌법에 따라 치리 중인 자

③ 무임 직분자(단, 2019년 이전 무임 직분자는 제외)

제10조(직분자 선거권이 없는 자) ① 심각한 건강 문제, 생업을 위한 장기 해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선거년도 3월 말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목장

모임 포함)에 참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이 중지된다.

② 선거일 현재, 교회 헌법에 따라 치리 중인 자

제11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① 직분자 선거권이 없는 자

② 제7조 ⑤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한 자

### 제3장 선거 일정과 선거관리

제12조(선거 일정)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정에 따라 직분자 선거를 진행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회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① 3월 셋째 주일까지 직분자 추천 선거 후보자 공람을 위한 후보자 자료 작성을 완료한다.

② 3월 마지막 주일부터 2주간 후보 대상자의 다음 사항을 벽보, 인트라넷,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보 대상자 전원 및 교우들에게 공람한다.

- 이름, 부서, 만 나이, 교회 등록일, 직분년수, 목장년수, 통합목자년수(목자년수 +교사년수), 신앙훈련 필수교육과정 이수 여부

- 장로 후보의 경우 배우자와 자녀 정보(예: 배우자 신사임당 권사와 1남 2녀)

- 통합목자년수는 교구 목자경력(청장년교구 목자는 2년을 1년으로 환산, 최대 2년/예비목자훈련 이수자에 한함)과 교사경력(2년을 1년으로 환산하며 최대 3년, 은혜부 교사 포함, 신반포 CA교사 제외)을 합산한다.

③ 4월 둘째 주일까지 직분자 후보 명부를 확정한다.

④ 4월 셋째 주일부터 2주간 직분자 후보의 다음 사항을 벽보, 인트라넷,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우들에게 공람한다.

- 사진, 이름, 부서, 연령, 직분년수, 목장년수, 통합목자년수(목자년수+교사년수), 신앙훈련 필수교육과정 이수 여부

⑤ 5월 둘째 주 주중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⑥ 5월 셋째 주일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 현장 투표를 진행한다.

⑦ 5월 넷째 주일 임시당회에서 공동의회에 추천할 직분자 후보 확정 및 공동의회에서 직분자 선거를 진행한다.

제13조(선거인 명부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 제4항의 후보자 명단 공람 기간 중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 및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2조 제5항의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 온라인 투표 실시 기간 중 공동의회 직분자 선거를 위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 및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온라인 투표) ① 현장 투표 전주 주중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② 모든 선거권자는 온라인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권자는 현장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지 발송 후 투표 참여 안내 문자를 2회 발송하고, 기표한 온라인 투표지를 접수하여 온라인 투표 시한 종료 후 즉시 결과를 집계한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무기명 비밀투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현장 투표가 마칠 때까지 온라인 투표 결과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한다.

**제15조(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일 진행)** ① 선거관리위원과 감독 장로와 봉사 권사는 후보자 명부와 기표지 관리에 신중을 기하며 투표 종료 시 투표 참여 인원수와 투표함의 기표지 수가 일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일 현장 투표 예상 인원을 고려하여 투표장소를 지정하고 선거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투표장소와 시간을 후보 광고와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③ 선거 감독 장로는 투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투표함을 관리하고, 봉사 권사는 선거인명부를 확인하여 기표지를 배부한다. 선거 감독 장로와 봉사 권사는 조별로 정해진 시간을 잘 준수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투표함을 수거하여 투표 인원과 기표지 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속히 개표 작업을 종료하고 투표 결과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16조(임시당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일주일 후 임시당회에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 결과를 보고한다.

② 당회는 직분자 후보 추천 선거 결과를 참고하여 공동의회에 추천할 직분자 후보를 결정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한다.

**제17조(공동의회에서 직분자 선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의회에서 선거에 참여할 선거권자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의회에 참석한 선거권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③ 공동의회 의장인 담임목사의 회의 순서에 따라 선거를 진행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의회의 선거가 종결된 후 개표를 실시한다.

**제18조(선거 결과 통지 및 보관)**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당회장에게 보고하고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당사자에게 문자로 통지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봉인하여 선거년도 연말까지 보관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에 대한 회의록 등의 자료는 스캔하여 파일로 2년간 보관한다. (문서관리부로 이관한다.)

##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9조(위원 정수 및 임명) 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위원장은 선거년도 직전 연말당회에서 임명하며, 다른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임명한다.

제20조(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총회 헌법 및 남서울교회의 공동의회 규칙에 의한 직분자 선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선출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위원회는 직분자 선거 관련 모든 업무를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시행·총괄하고 그 진행 상황과 결과를 당회에 보고한다.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당회에서 시무장로 3명, 행정목사, 행정실장으로 임명하여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임명된 장로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시무장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당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해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은 해임된다.

1. 위원이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경우

2. 위원이 시무 사면 또는 은퇴한 때

제24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5조(업무 협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절차와 관련하여 교회 행정지원실과 모든 위원회 및 자치회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 봉사자 요청 및 교육) ① 위원회는 당회와 권사회에 선거일 1개월 전에 선거일 투표 현장을 감독할 장로와 선거인명부 대조 및 기표지 배부 등을 담당할 권사를 일정 수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직전 주일에 추천받은 장로와 권사를 대상으로 선거일에 봉사 시간과 장소, 역할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선거일에 사용할 선거인 명부, 후보자 명부, 기표지, 수성펜, 투표함 등을 준비하여 사전 교육 시에 활용한다.

제27조(경비 부담) 위원회의 직무에 관련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교회가 부담하며 이를 위하여 교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202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2022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2022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7조 ①, ②, ③항 2의 경과 규정) 신앙훈련 필수교육과정에 과거에 개설되었던 신약신학, 구약신학, 영성회복학교를 포함한다.

제3조(제12조 ②항의 경과 규정) 2013년 이전에 교구로 편성되었던 장년부 및 믿음회 목사 경력은 2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최대 2년까지 통합목자년수에 합산한다. 단, 장년부 및 믿음회 목사 경력 합산은 교회 인트라넷에 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2022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202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